

노동이사제 운영 규정

제정 2021. 03. 24. 규정 제216호

개정 2023. 12. 20. 규정 제25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하여 상생과 협력을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며,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0.>

제2조(적용범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동이사제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0.>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2. 20.>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노동이사”란 진흥원 근로자 중에서 임명 또는 선임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제4조(노동이사 정수) 진흥원의 노동이사는 1명으로 하며, 비등기 이사로 한다. <개정 2023. 12. 20.>

제5조(후보자격) 노동이사는 진흥원 근로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된 사람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이사가 될 수 없다. 임명 시 또는 임명 후에도 그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졌을 경우 노동이사직을 상실한다. <개정 2023. 12. 20.>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10조제1항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
3. 사용자를 대변하는 각 실장, 각 부서장 및 인사·감사·노무 업무 담당자
4. 노동이사 선임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확인된 자

제6조(노동이사 후보) ① 노동이사 후보자 공개모집은 직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진흥원 내부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② 노동이사 후보가 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노동이사 후보 지원서’와 휴직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정직 등의 사유로 출근하지 않는 직원을 제외한 근무직원의 25명 이상의 추천서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 노동이사 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단, 근무직원이 추천할 수 있는 후보자의 수는 1명으로 한

다. <개정 2023. 12. 20.>

③ 노동이사 후보자의 심의와 이사회 추천은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3. 12. 20.>

④ 원장은 노동이사 충원사유가 발생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제7조(노동이사의 임명) ① 노동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노동이사 후보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개정 2023. 12. 20.>

②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에 선출, 선임 또는 위촉된 자

제8조(임기 및 연임) ① 노동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임기도 종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2. 20.>

② 노동이사가 임기 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시 제6조에 따라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12. 20.>

제9조(권한과 책임) ① 노동이사는 진흥원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3. 12. 20.>

② 노동이사는 법령과 진흥원 제 규정 등에서 부여되는 직원과 비상임임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③ 노동이사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진흥원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12. 20.>

제10조(제척·회피) ① 노동이사는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 12. 20.>

② 노동이사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0.>

제11조(원장의 책무) ① 원장은 노동이사가 비상임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기회를 부여하고 회의 안건 관련한 정보를 법률과 규정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0.>

② 원장은 노동이사인 직원이 노동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12. 20.>

- ③ 노동이사의 이사회 출석 시간과 그밖에 노동이사로서 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 등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개정 2023. 12. 20.>
- ④ 원장은 노동이사를 인사·감사·노무 업무 담당자 및 부서장으로 인사발령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 12. 20.>

제12조(수당 등) ① 노동이사의 직무수행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동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기준은 법령과 진흥원 제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13조(복무 등) ① 노동이사가 노동이사로서의 활동을 위하여 연장근로 및 출장, 회의참석 등을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노동이사 활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3. 12. 20.>

② 제1항의 활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며 연80시간으로 한다.

③ 노동이사는 직원으로서 근무평정의 대상이나 그 평정결과의 등급과는 상관없이 '평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0.>

부 칙 (2021. 03. 24. 규정 제21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공포한 후 3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20. 규정 제25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공포한 후 3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노동이사 후보 지원서			사진 3×4cm
성명			
주소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사원번호	
소속부서		직 급	
근무이력	근무기간	근무부서	
	년 월 ~ 년 월		
위와 같이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노동이사 후보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후보자 : (인)			
구비서류	1. 직무수행계획서 1부 2. 노동이사 후보등록 직원 추천서 1부.		

노동이사 후보등록 직원 추천서

추천후보	성 명		
	생년월일		
	소속부서		
	직 급		
연번	성 명	소속부서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공란이 부족할 경우 양식을 복사하여 사용

노동이사 활동신고서

결 재	담당자	팀장

성 명	일 시				사 유
	시작일	시작시간	종료일	종료시간	